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예산 1200-

(전화번호 481)

전 결 규 정 조 항
과 결 사 랑

처리기간

시

시행일자 78. 5.

보존년 한

5.12

결재
1978. 5. 12
시장

보조기관	제1부 시장	제2부 시장				
	기획관리관					
	예산담당관					
기안책임자		예산총괄계장 김우석	조			

경수참	유신조	내부결재	발신	봉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검열 1978. 5. 13 서울특별시</p> </div>
-----	-----	------	----	----	---

제 목 197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 고시

197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78. 5.10.자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별첨 고시안과 같이 고시코저 합니다.

첨부 고시안 10부. 끝.

고시제 200호	고시제 207호
고시제 201호	고시제 208호
고시제 202호	고시제 209호
고시제 203호	
고시제 204호	
고시제 205호	
고시제 206호	


고시제 208호

정서

관인

발송

서울특별시 고시제 700 호

공고	1978.5.12	제 134 호
담당	기획	17담당관
	전경	



197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 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회 계 명	예 산 액
일반회계	302,326,091 천원

197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국 심 사	1978년 제1회	151호
담 당 장		담 당 관
	전 계	

서울특별시 고시제 201 호

197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 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8년도 서울특별시국민주택사업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회 계 명	예 산 액
----- 국민주택사업비 특별회계	24,236,000천원

197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른

50심사	12	136
담당자	전경	사무담당관

서울특별시 고시제 202 호


197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 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8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개량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회 계 명	예 산 액
주택개량비 특별회계	8,668,000 천원

197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용인심사	1978.5.1	118호
담당자		담당관
	전경	

서울특별시 고시제 203 호


197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 고시

국무총리의 송인을 얻은 1978년도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회 계 명	예 산 액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11,100,000 천원

197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공인심사	25.12.13	제138호
담당자		사무담당관
	전진	

서울특별시 고시제 704 호

197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 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8년도 서울특별시 유료도로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회 계 명	예 산 액
유료도로비특별회계	2,720,000 천원

197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302	5.12	12	호
당	당	장	관
	정	관	관

서울특별시 고시제 205 호

197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 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8년도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회 계 명	예 산 액
하수처리장 특별회계	4,000,000 천원

197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서울특별시 고시제 206 호

행정	서울특별시	제 146 호
담당	전경	담당관



197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 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8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회 계 명	예 산 액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187,000 천원

197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공인	8.1.12	제141호
담당		국무총리
	전제	

서울특별시 고시제 207 호

197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 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8년도 서울특별시 재해구호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회 계 명	예 산 액
재해구호비특별회계	383,000천원

197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서울특별시 고시제 208

부	15.12	142호
국	전정	장관
인		

197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 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8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외 계 명	예 산 액
수도사업비 특별회계	36,773,000 천원

197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시장 구 자 훈

42	1978.5.10	143 조
	전적	무담당관
		<i>[Signature]</i>

서울특별시 고시제 509 호

197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 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8년도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수사업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회 계 명	예 산 액
지하철운수사업비특별회계	53,564,339 천원

197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